

의안번호	2220862
의 퇴 인	윤한홍 의원
회 답 일	2026. 9. 22.
추계번호	26F43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국내생산세액공제)	○ 반도체, 이차전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품목을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·판매하는 경우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적격품목: 반도체, 이차전지, 핵심소재, 지능형 로봇 부품, 태양광발전, 풍력발전,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품목 ※ 세부품목은 대통령령에 규정 － 공제요건: 생산요건 및 판매요건 (생산요건) ① 내국인이 직접 생산 ② 국내에서 핵심공정 수행, 비용의 국내지출 비중 등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생산에 사용한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음 (판매요건) ① 내국인이 직접 판매 ②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③ 적격품목이 생산되거나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 ④ 중고품 판매는 제외, 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영리목적 거래임을 증명할 것 － 공제율: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 ※ 수도권 밖에서 생산시 공제액은 150% 적용 － 공제한도: 다음 ①, ② 중 최소값 ① 해당연도 적격품목 생산비용의 50% ② 생산에 사용된 시설투자 누계액의 50% - 직전 과세연도까지 생산세액공제의 누계액 － 적용기한: 2036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(국내생산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반도체, 이차전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품목의 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 신설 등)
 - 개정안은 반도체,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(적격품목)을 일정 요건에 맞게 생산·판매하는 경우, 판매량에 따라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적격품목: 반도체, 이차전지, 핵심소재, 지능형 로봇 부품, 태양광발전, 풍력발전,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
 - ※ 단,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생산된 품목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 - 공제요건: 생산요건 및 판매요건
 - (생산요건) ① 내국인이 직접 생산
 - ② 국내에서 핵심공정 수행, 비용의 국내지출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 - ③ 생산에 사용한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음
 - (판매요건) ① 내국인이 직접 판매
 - ②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
 - ③ 적격품목이 생산되거나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
 - ④ 중고품 판매는 제외하며, 판매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영리목적의 거래임을 증명할 것
 - 공제율: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규정
 - ※ 수도권 밖에서 생산시 공제율은 150% 적용
 - 공제한도: 다음 ①, ② 중 최소값
 - ① 해당연도 적격품목 생산비용의 50%
 - ② 생산에 사용된 시설투자 누계액의 50% - 직전 과세연도까지 생산세액공제의 누계액
 - 적용기한: 2036.12.31.
 - ※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미공제금액이 발생하는 경우, 10년간 이월공제가 허용
 - 개정안은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될 수 없으며,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특례 신설을 포함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생산 및 판매요건을 충족하는 반도체 등 분야 적격품목의 지역별 판매량 및 생산시설의 통합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적격품목 해당 여부 및 공제액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개정안은 적격품목 해당여부, 품목당 공제액, 공제한도 관련 생산비용 산정 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규모를 판별할 수 없음
 - － 개정안의 적격품목 분야에는 반도체, 이차전지, 핵심소재, 지능형 로봇 부품, 태양광 발전, 풍력발전, 전기차 및 소형모듈원자로 등이 있으나, 세부적으로 특정 품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 - － 또한, 공제규모와 한도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품목당 공제액, 생산비용의 산정 방식, 생산 및 판매요건의 세부적인 사항 등도 시행령 규정이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공제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른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, 이월공제 특례에 따른 세수효과, 통합투자생산세액공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공제 취소신청 특례 신설 등의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